

##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 
수정한다.

- 안 제14조 (해임사유)의 조문 중  
“해임하여야 하며,” 를 “해임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  
“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직에서 물러나야 한다.”를  
삭제한다.
- 안 제31조 (의용소방대연합회 등) 제4항의 조문 중  
“63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## 수정안 대비 표

개정안	수정안
<p>제14조(해임사유)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임용권자는 이를 <u>해임하여야 하며, 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려나야 한다.</u></p> <p>1. ~ 7. (생략)</p>	<p>제14조(해임사유)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임용권자는 이를 <u>해임하여야 한다. (삭제)</u></p> <p>1. ~ 7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31조(의용소방대연합회 등)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도 및 시·군연합회장은 정년은 <u>63세</u>로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31조(의용소방대연합회 등)</p> <p>①~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도 및 시·군연합회장은 정년은 <u>65세</u>로 한다.</p> <p>⑤ (개정안과 같음)</p>